##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용안내

## ① 목적

이 실천사항은 회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」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정한 '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'라 함) 설치 및 운용 실천사항'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②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실천사항

## 가. 기본원칙

- 이 실천사항은 회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, 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,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,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'하도급 관리지침'에 의한다.
- 나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실천사항
- (1)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
  - (¬)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  - (L) 기존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 (¬)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.
- (2)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
- (¬) 내부 심의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,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(L) 내부 심의위원회는 회사의 실행예산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

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
[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]

- ·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- ·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
- ·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- · 물품 등의 강제 구매금지 위반여부
- ·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- (C) 내부 심의위원회는 당사의 직전 사업년도 하도급거래 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 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 계약금액이 1% 이상인 거래의 계약 종료 시 계 약 수행 간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을 사후 심의하여야 한다.
- (리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,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

하여야 한다.

- (ロ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- (ㅂ) 우수협력업체 선정결과를 검토 및 승인하여야 한다.
- (시) 필요 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- (o)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 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예 : 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
- (ㅈ)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